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0
----------	-----

제출년월일 : 2000. 12. 12.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임진각 관광지내의 통일연못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통일기원 무궁화 꽃등 띄우기」 관광 상품을 개발,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관광 파주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골자

무궁화 꽃등 띄우기 사용료를 1,000원으로 정함.(안제5조, 별표 2)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관광지명·구분 및 금액중 임진각관광지란에 무궁화 꽃등 띄우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진각관광지	무궁화 꽃등 띄우기	1,000원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체육과(940-4363)
입안자	문화체육과장	박 제 홍
	관광정책담당	김 진 성
	담당자	이 성 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2] 시설사용료				[별표2] 시설사용료				
관광지별	구분		금액	관광지별	구분		금액	
공통 관광지	주차료	승용차	1,000원	공통 관광지	주차료	승용차	1,000원	
		중형차	1,500원			중형차	1,500원	
		대형차	2,000원			대형차	2,000원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승용차	2,000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	승용차	2,000원	
		중형차	3,000			중형차	3,000원	
		대형차	4,000			대형차	4,000원	
	평화의 종 타종		팀당 30,000원		평화의 종 타종		팀당 30,000원	
	<신설>				무궁화 꽃등 띄우기		1,000원	

지방자치법

第127條 (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② 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1條 (使用料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①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平한 방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②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

③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の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를 決定·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⑤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行政訴訟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處分廳을 當事者로 하여 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1999·8·31 法律第6002號에 의하여 1998·6·25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條第5項을 改正]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法定期間내에 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90日이내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新設 99·8·31]

⑦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방법과 節次등에 관하여는 地方稅法 第73條 및 第75條 내지 第7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8·31]